

투자권유준칙

제정 2019.12.30

개정 2026.07.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소법감독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 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금소법, 금소법시행령, 금소법감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대출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에 따라 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또는 그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3.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4.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 가.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
 - 나.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대출성 상품

제3조(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투자자 구분 등

제4조(방문 목적 확인)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 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 구분)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 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로 본다.

제3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6조(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적정성원칙 대상상품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 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를 다

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을 판매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와 설명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이행 및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 투자자문계약과 결합된 금융투자회사의 판매계좌(자문결합계좌)를 통해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의사가 전달되는 경우

제7조(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대한 특칙) ①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재산상황, 취득 및 처분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금소법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른 방법(서면교부,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투자자에게 알리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또는 금소법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수단(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제10조 및 제12조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③ 임직원은 제2항의 경우에, 적정성 판단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서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1절 투자자정보

제8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과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4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3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를 따른다.

제9조(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제1항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 변경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하여야 한다.

제2절 투자권유

제10조(투자권유 절차) ①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별지 제2호]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④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여서는 아니된다.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스스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 주고 해당 투자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며, 특히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 등은 금소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① 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10조 제1항에 따른 [별지 제2호]의 적합성판단 기준과 [별지 제6호]의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등은 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

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취득경로, 권유하려는 금융상품의 종류·내용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해당 금융소비자가 투자권유를 받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사모펀드,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나.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 장외파생상품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 가.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나.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1) 금융투자상품: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2)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가)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다)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3) 신탁계약
 - (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 (나)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른 유형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본다.
 - (가) 기초자산의 종류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 (나) 선도, 스왑, 옵션 등 금융투자상품의 구조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5.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6.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7.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8.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9. 투자자가 법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10. 투자자의 사전 동의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11. 금소법 제17조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12.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13. 금소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정보를 파악하거나 확인을 받을 때에 투자자가 특정한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14. 투자자와 대면하여 투자성 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한 후 투자자로부터 요청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계약할 것을 권유하거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투자자를 대신하여 비대면 방식의 투자성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 ④ 임직원등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이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그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와 계열회사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2. 계열회사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권유하여야 한다.

제13조(확인서 징구 계약 관련 유의사항) ① 회사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투자권유불원 등)는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를 거쳐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현황 및 관련 민원 현황 등을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파악 및 점검하고 내부 보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절 설명의무

제14조(설명 의무)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 투자자: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2. 임직원등: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

③ 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

1.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

④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⑤ 임직원등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이 작성한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1.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3. 기본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또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⑦ 임직원등은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⑧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임직원등은 위험등급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사유를 함께 설명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위험등급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⑩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15조(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외화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설명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시장상황 등의 특징
 2.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국가의 거래제도·세제 등 제도의 차이
 3.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14. 1)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2.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헤지비율, 환헤지 대상 통화, 주된 환헤지 수단 및 방법
 3.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4.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예: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제5장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제16조(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 ① 회사는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 및 [별지 제3호]와 같이 분류한다.

- ② 위험등급은 최소 6단계 이상으로 구분하고, 1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한다.
- ③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④ 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측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제6장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17조(계약서류의 교부) ① 회사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소법령에 따른 계약서류를 다음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다음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교부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내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제17조의2(청약의 철회) ①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회사와 투자자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서면(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금소법시행령 제37조제2항의 방법을 말한다. 이하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1. (금소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2. (금소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투자자가 예약한 금전 등(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7조의2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서면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④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⑤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 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약의 철회에 대한 특약으로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⑥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반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제17조의3(위법 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금소법 제17조(적합성 원칙)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제2항, 제19조(설명의무)제1항·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1.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2. 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② 투자자가 제1항에 따른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자의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투자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 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3.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4.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투자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1)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 (2) 금소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5. 투자자가 회사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회사는 제2항,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18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조제3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19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 받아야 한다.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등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4.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9.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10.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11.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12.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13.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의 각 호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제20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제21조(투자일임에 대한 특칙) 투자일임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임직원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가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2. 임직원등은 제1호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 제2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이하 "투자자유형"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3. 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자산을 개별적으로 1:1 로만 운영하는 경우(특정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지 않는 경우)는 자산배분유형군이나 세부자산배분유형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제1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

5. 임직원등은 투자일임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가.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나.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다. 제1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라.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제22조(실명 확인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1.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적격한 신분증에 의하여 실제명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의하여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등) 회사 및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금융거래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동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융정보 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전문금융소비자에 대한 특칙) 전문투자자의 경우 투자자가 정한 별도의 가이드라인 또는 운용지침에 따라 투자자유형을 분류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 회사가 투자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분류한다.

제25조(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① 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 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세부내용은 금소법시행령 제26조 참조)를 10년(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 동안) 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준칙은 201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준칙은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투자자정보 확인서(일반금융소비자-개인용)

-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및 제4-93조에 따라 고객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 투자자정보 확인서 작성 유효기간(24개월)이 경과한 경우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새로 작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 기본정보

☐ 신규등록	☐ 기존정보와 동일	☐ 정보변경
-------------------------------	-----------------------------------	-------------------------------

※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전문투자자(전문금융소비자)가 투자자 유형 조사생략을 원하는 경우 자기의 투자자유형을 선택할 수 있음

- 투자자정보 제공여부(자필 기재)

☐ 투자자정보 <u>제공</u>	☐ 투자자정보 <u>미제공</u>
--	---

※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반드시 투자자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투자권유 희망여부(자필 기재)

☐ 투자권유 <u>희망</u>	☐ 투자권유 <u>희망하지 않음</u>
---	--

※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자권유를 받아야 함

- 투자자정보

항목	답변	비고
1. 연소득 현황	① 3천만원 이하 ② 5천만원 이하 ③ 1억원 이하 ④ 1억원 초과	
2. 향후 자신의 수입원에 대한 예상	①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②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③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금이 주 수입원임	
3. 총 자산대비 금융자산의 비중	① 20% 이하 ② 40% 이하 ③ 60% 이하 ④ 80% 이하 ⑤ 80% 이상	
4. 투자경험이 있는 금	(복수선택가능)	

■ 투자자성향

위 투자자정보 설문의 문답을 토대로 계량화 되어 분류된 투자자 성향	☐ 안정형 : 투자원금의 손실 발생 자체를 원하지 않는 유형으로, 예금이나 적금 수준의 수익을 기대하는 단계입니다. ☐ 안정추구형 : 예·적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원하지만 위험으로 인한 손실은 최소화하고자 하는 유형입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 수익을 목표로 하고, 단기적 손실은 제한적으로만 감수하며, 자산의 일부만 변동성 있는 상품에 배분하려는 성향으로 설명됩니다. ☐ 위험수익중립형 : 투자위험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투자손실은 감수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수익에는 그만큼의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 단계로 설명됩니다. ☐ 적극투자형 :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유형입니다.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파생상품 등 위험자산에 넣을 의향이 있다는 점에서 공격투자형과 방향은 같지만 비중이 다릅니다. ☐ 공격투자형 : 시장평균 수익률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유형입니다.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 펀드, 파생상품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
---	--

■ 일임자산의 운용 유형 (세부자산 유형 선택)

☐ 안정형 : 안정적인 자산(ex. 채권 등)에 투자하되 정기예금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저위험 상품 ☐ 분산형 : 국내외를 불문하고 다양한 투자자산(ex. 주식, 메자닌, 채권 등)편입을 통해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파생상품등을 통하여 헤지하여 중위험·중수익을 목표로 하는 상품 ☐ 집중형 : 리서치를 통해 엄선된 소수의 투자자산(ex. 메자닌, 비상장 주식 등)에 집중투자 하여 고수익을 목표로 하는 상품

본인은 귀사와의 투자일임계약체결을 위해 일임계약서와 투자자정보확인서에 기재되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귀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본인의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귀사가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년 월 일 고객님의 성명 : _____ 서명/인 (대리인 거래 시 대리인 성명 : _____ 서명/인
--

투자자정보 확인서(일반금융소비자-법인용)

-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및 제4-93조에 따라 고객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 투자자정보 확인서 작성 유효기간(24개월)이 경과한 경우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새로 작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 기본정보

☐ 신규등록	☐ 기존정보와 동일	☐ 정보변경
-------------------------------	-----------------------------------	-------------------------------

※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전문투자자(전문금융소비자)가 투자자 유형 조사생략을 원하는 경우 자기의 투자자유형을 선택할 수 있음

- 투자자정보 제공여부(자필 기재)

☐ 투자자정보 <u>제공</u>	☐ 투자자정보 <u>미제공</u>
--	---

※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반드시 투자자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투자권유 희망여부(자필 기재)

☐ 투자권유 <u>희망</u>	☐ 투자권유 <u>희망하지 않음</u>
---	--

※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자권유를 받아야 함

- 투자자정보

항목	답변	비고
1. 회사의 업력	① 3년 이하 ② 5년 이하 ③ 10년 이하 ④ 10년 초과	
2. 향후 자신의 수입원에 대한 예상	①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②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③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3. 총 자산대비 금융자산의 비중	① 20% 이하 ② 40% 이하 ③ 60% 이하 ④ 80% 이하 ⑤ 80% 이상	
4.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복수선택가능) ①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등 ②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③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 ④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등 ⑤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5. 투자목적	①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을 원하며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 위험도 감내 가능 ②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목적 ③ 시장(예: 주가지수) 가격 변동 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 실현 ④ 채권이자·주식배당 정도의 수익 실현 목적 ⑤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 헤지 목적 ※ 기대수익이 높을수록 손실위험도 커짐	
6. 금융지식수준/이해도	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 ②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음 ③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 ④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	
7.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투자위험감수능력)	①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함 ②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음 ③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음 ④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	
8. 현재 투자목적에 고려한 원금보존태도	① 투자수익을 고려하나 원금보존 추구 ② 원금보존을 고려하나 투자수익 추구 또는 손실위험이 있더라도 투자수익 추구	
9. 손실감내 수준	① 원금기준 -5% 범위 ② 원금기준 -10% 범위 ③ 원금기준 -20% 범위 ④ 원금기준 -20% 범위 초과	
10. 투자예정기간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③ 1년 이상 ~ 2년 미만 ④ 2년 이상 ~ 3년 미만 ⑤ 3년 이상	
11. 연 이익 현황	① 적자 ② 10억원 이하 ③ 20억원 이하 ④ 30억원 이하 ⑤ 30억원 초과	

■ 투자자성향

위 투자자정보 설문의답을 토 대로 계량화되 어 분류된 투 자자 성향	☐ 안정형 : 투자원금의 손실 발생 자체를 원하지 않는 유형으로, 예금이나 적금 수준의 수익을 기대하는 단계입니다. ☐ 안정추구형 : 예·적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원하지만 위험으로 인한 손실은 최소화하고자 하는 유형입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 수익을 목표로 하고, 단기적 손실은 제한적으로만 감수하며, 자산의 일부만 변동성 있는 상품에 배분하려는 성향으로 설명됩니다. ☐ 위험수익중립형 : 투자위험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투자손실은 감수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수익에는 그만큼의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 단계로 설명됩니다. ☐ 적극투자형 :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유형입니다.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파생상품 등 위험자산에 넣을 의향이 있다는 점에서 공격투자형과 방향은 같지만 비중이 다릅니다. ☐ 공격투자형 : 시장평균 수익률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유형입니다.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 펀드, 파생상품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
---	--

■ 일임자산의 운용 유형 (세부자산 유형 선택)

☐ 안정형 : 안정적인 자산(ex. 채권 등)에 투자하되 정기예금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저위험 상품 ☐ 분산형 : 국내외를 불문하고 다양한 투자자산(ex. 주식, 메자닌, 채권 등)편입을 통해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파생상품등을 통하여 헤지하여 중위험·중수익을 목표로 하는 상품 ☐ 집중형 : 리서치를 통해 엄선된 소수의 투자자산(ex. 메자닌, 비상장 주식 등)에 집중투자 하여 고수익을 목표로 하는 상품

본인은 귀사와의 투자일임계약체결을 위해 일임계약서와 투자자정보확인서에 기재되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귀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본인의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귀사가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년 월 일

고객의 성명 : _____ 서명/인

(대리인 거래 시 대리인 성명 : _____ 서명/인

[별지 제2호]

적합성 판단 방식 (1)

□ 투자성향 점수화 방식

1. 각 항목별 점수

개인		법인	
문항내용	응답번호별 배점	문항내용	응답번호별 배점
1. 연소득 현황	① 2 ② 6 ③ 8 ④ 10	1. 회사의 업력	① 1 ② 3 ③ 4 ④ 5
2. 향후 자신의 수입원에 대한 예상	① 10 ② 6 ③ 2	2. 향후 자신의 수입원에 대한 예상	① 10 ② 6 ③ 2
3. 총 자산대비 금융자산의 비중	① 10 ② 8 ③ 6 ④ 4 ⑤ 2	3. 총 자산대비 금융자산의 비중	① 10 ② 8 ③ 6 ④ 4 ⑤ 2
4.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① 0 ② 2 ③ 6 ④ 8 ⑤ 10	4.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① 0 ② 2 ③ 6 ④ 8 ⑤ 10
5. 투자목적	① 10 ② 8 ③ 6 ④ 4 ⑤ 2	5. 투자목적	① 10 ② 8 ③ 6 ④ 4 ⑤ 2
6. 금융지식수준/이해도	① 0 ② 6 ③ 8 ④ 10	6. 금융지식수준/이해도	① 0 ② 6 ③ 8 ④ 10
7.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투자위험감수능력)	① 0 ② 2 ③ 6 ④ 10	7.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투자위험감수능력)	① 0 ② 2 ③ 6 ④ 10
8. 현재 투자목적을 고려한 원금보존태도	① 0 ② 10	8. 현재 투자목적을 고려한 원금보존태도	① 0 ② 10
9. 손실감내 수준	① 0 ② 6 ③ 8 ④ 10	9. 손실감내 수준	① 0 ② 6 ③ 8 ④ 10
10. 투자예정기간	① 0 ② 2 ③ 6 ④ 8	10. 투자예정기간	① 0 ② 2 ③ 6 ④ 8

	⑤ 10		⑤ 10
11. 연령	① -1 ② 0 ③ -1 ④ -3 ⑤ -5	11. 연 이익 현황	① 0 ② 2 ③ 3 ④ 4 ⑤ 5
12. 취약투자자 여부			

※ 위의 표에 따라 채점 후, 각 문항별 점수의 총합으로 투자자의 투자성향으로 확정함

2. 투자일임계약 적합성 판단 기준

점수별 구분	투자성향	적합성 판단
80점 이상 ~ 100점 이하	☐ 공격투자형	적합
60점 이상 ~ 80점 미만	☐ 적극투자형	
40점 이상 ~ 60점 미만	☐ 위험수익중립형	부적합
20점 이상 ~ 40점 미만	☐ 안정추구형	
0점 이상 ~ 20점 미만	☐ 안정형	

적합성 판단 방식 (2) - 파생상품 등 (장외파생상품 제외)

구 분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 경험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만 65세 이상	- 파생상품등 권유불가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등
만 65세 미만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등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

1. 집합투자기구 : 투자대상의 종류 및 위험도 (설정 후 3년 미경과 펀드)

등급(분류기준)	국내투자 신규펀드 등급 분류기준
1등급 (매우높은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함
-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 등급은 투자대상·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함

2. 집합투자증권 : 최근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시장위험등급표(설정 후 3년 경과 펀드)

등급	매우높은위험 (1등급)	높은위험 (2등급)	다소높은위험 (3등급)	보통위험 (4등급)	낮은위험 (5등급)	매우낮은위험 (6등급)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를 곱해 산출
- 설정 후 3년 경과 펀드라고 하더라도 수익구조 등이 특수한 펀드의 경우 투자대상의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

3. 위험도별 투자가능자산

상품위험등급		매우높은위험 (1등급)	높은위험 (2등급)	다소높은위험 (3등급)	보통위험 (4등급)	낮은위험 (5등급)	매우낮은위험 (6등급)	
고객투자성향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수익 중립형	안정 추구형	안정형	
채권		B+이하 또는 무등급	BB+ 이하	BBB+ 이하	A+ 이하	AA- 이상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특수채	
파생 결합 증권	ELS,DLS	종목형원금 비보장 (최대원금손실 20% 초과)	지수형원금 비보장 (최대원금손실 20% 초과)	원금 부분 지급 (90% 미만 ~ 80% 이상)	원금부분 지급			
	ELW	ELW						
주식		해외주식 신용거래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코넥스 K-OTC	국내 일반주식					
선물, 옵션, ETF		선물, 옵션, 파생형 ETF	일반 ETF					

[별지 제4호]

투자자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가능상품 분류기준

구분	매우높은위험 (1등급)	높은위험 (2등급)	다소높은위험 (3등급)	보통위험 (4등급)	낮은위험 (5등급)	매우낮은위험 (6등급)
공격투자형	○	○	○	○	○	○
적극투자형		○	○	○	○	○
위험수익 중립형				○	○	○
안정추구형					○	○
안정형						○

[별지 제5호]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선택(거래) 확인서

- 동 확인서는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에 대한 거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 의 사 항 >

1.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투자성 상품 가입시 스타케스트자산운용(이하 “회사”라 한다)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 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 투자자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3. 투자자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4.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5. 투자자성향 대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더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투자자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적정성 원칙* 대상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스타케스트자산운용(이하 “회사”라 한다)는 면담·질문 등을 통해 해당상품이 귀하에게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 결과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적정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 :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확인할 의무

투자자 확인사항(자필기재)

적합(적정)성 진단 결과	투자자성향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위의 유의사항을 확인(인지)하였으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가 본인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어떠한 업무처리도 회사가 본인에게 본 거래가 적격하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투자자의 성명 : _____(서명/인)

대리인거래시 대리인 성명 : _____(서명/인)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1. 고령투자자 보호 필요성

- 고령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쇠약과 더불어 기억력과 이해력이 저하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또한, 대부분의 고령투자자들이 별도의 소득원이 없고, 잔여투자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 아울러, 최근 금융투자상품이 구조화·첨단화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2. 고령투자자의 정의

- 회사는 65세 이상을 고령투자자로 정의하고, 그 중 80세 이상은 보다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하는 초고령투자자로 정의합니다.
-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투자자에 대하여 고령투자자에게 적용하는 판매절차를 준용합니다.
- 계좌명의인이 고령이 아니면서 대리인이 고령인 경우와 계좌명의인이 고령이면서 대리인이 고령이 아닌 경우에도 고령투자자에게 적용하는 판매절차를 준용합니다.

3. 고령투자자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1) 고령투자자 전담창구 마련

- 회사는 고령투자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담과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령투자자 전담창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지정

- 회사는 고령투자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하는 사내 전담부서 및 전담직원을 지정합니다.

(3) “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 회사는 장외에서 거래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구조화증권 등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고, 지정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합니다.

(4) “투자권유 유의상품” 투자권유시 사전 확인

- 회사는 임직원이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준법감시담당자가 권유의 적정성을 사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준법감시담당자는 고객과의 직접적 면담(투자권유시 배석 등) 또는 전화를 통해 고객의 이해여부 및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사전 확인하고 확인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 준법감시담당자가 사전 확인한 결과, 고객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상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을 중단하여야 하고,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과 회사가 투자권유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 준법감시담당자는 최근 투자자정보 변경여부, 투자자금의 성격, 투자권유 과정의 적법성, 주요 설명내용의 이해여부, 사리분별능력의 현저한 변화 유무 등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판단되지만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준법감시담당자가 추가로 설명한 후 고객의 투자의사를 재확인하여 판매가능 합니다.

(5) 상품 개발·판매시 고령투자자 판매 위험분석

- 회사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신상품 개발시 고령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만일, 고령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설명서,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합니다.
- 회사는 다른 회사가 개발한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고령투자자 보호 측면을 살펴보고, 고령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6) 녹취제도 및 숙려 제도

- 회사는 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4. 고령투자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 강화

(1) 고령투자자 판매절차 내규 마련 및 교육 강화

- 회사는 고령투자자 응대방법 및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등을 담은 내규를 제정 해야 합니다.
- 회사는 임직원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교육을 통해 내규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2) 내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점검

- 회사는 감사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 등을 통해 고령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추출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을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3) 가족 등 조력자의 연락처 확인

- 고령투자자의 경우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령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연락처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고령투자자 또는 조력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창구에서 고객이 녹취전화로 조력자에게 직접 전화하도록 하여 동의내용을 녹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고령투자자 대상 마케팅 활동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고령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과장정보, 투자광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5. 초고령자에 대한 추가 보호방안

- 회사는 초고령자에게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투자권유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회사는 초고령자에게 판매가 부적절한 상품으로 설명서 또는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된 상품을 투자권유할 수 없고, 임직원의 투자권유가 없는데도 고객이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임을 설명하는 등 판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피콜 등을 통해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상담내용 등의 기록·유지

- 회사는 향후 분쟁 등에 대비 고령투자자와의 상담내용 등을 녹음·녹화하거나 판매직원 또는 관리직 직원이 기록·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지 제7호]

[고객보관용]

투자(일임,자문)계약 권유문서 교부 및 계약내용 설명 확인서

투자위험등급 : ____ 등급 ____ 위험	자산운용은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매우높은위험에서 매우낮은위험까지 투자위험 등급을 6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당상품은 당사 위험등급 ____등급 (____위험)으로 2등급 이하의 자산만 편입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 기준에 따른 계약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

◆ 대상 계약명 :

◆ 계약회사 및 직원 : 스타캐스트자산운용 부서 _____ 직위: _____ 연락처: _____ 성명: _____ (서명)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 의무)」, 「동법 시행령 제13조 (설명 의무)」 등에 의거,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설명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 투자판단 시 당사가 제공하는 사전서면 자료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계약은 실적배당 원칙으로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고 당사는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계약은 투자에 따른 손실위험이 있으므로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지 판단하시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4)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5) 이 계약 사전서면자료에 기재된 당사의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6) 계약이전에 투자대상 자산, 보수체계(사전서면자료 기재) 및 투자위험 등에 관하여 반드시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7) 이 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투자 위험 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위험에 체크) ☐ 시장위험 :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위험 ☐ 거시환경 위험 :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 ☐ 개별기업 위험 : 투자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에 따른 변화에 노출 ☐ 유동성위험 :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하여, 가치하락 초래 ☐ 기타 위험 ()
8) 이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언제든지 서면 또는 유선을 통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본보수를 선취한 경우 미경과분에 대한 일부 환급 및 해당 기간 운용성과에 따른 성과보수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9) 일부 증권(레버리지 ETF 등) 등은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해지에 따라 보유자산 매도 시 매매에 따른 가치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11) 운용규모가 계약의 일부 해지 및 손실 등에 의하여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투자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별지 제8호]
[회사보관용]

투자(일임,자문)계약 권유문서 교부 및 계약내용 설명 확인서

- ◆ 대상 계약명 :
- ◆ 상대적 위험도 : 총 6단계중 ____ 번째로 높음. _____ 위험
- ◆ 계약회사 및 직원 : 스타퀘스트자산운용 부서 _____ 직위 _____ 연락처 _____ 성명 _____ (서명)

확인 사항

(고객)

1.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 (설명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미교부)
2. 상품의 내용, 핵심 투자위험(신용위험, 시장위험, 환위험 등), 원금손실 가능성 (예금자보호법 상 보호상품 아님*),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계약의 해제·해지, 취약 금융소비자 우선설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3. 동 상품의 투자위험은 6등급 중 ()등급(매우높은위험 / 높은위험 / 다소 높은위험 / 보통위험 / 낮은위험 / 매우낮은위험)으로 최대 원금 전액손실이 가능하며 조기상환, 환매 불가 여부 등 해당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였음

(판매 담당 임직원)

상품의 위험도, 최대 손실 가능성, 수수료, 조기상환 또는 환매 조건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고객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하였음

년 월 일

성명 _____(인/서명)

(대리인 계약 시) 대리인 _____(인/서명)

[별지 제9호]

계약 후 확인 절차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자문, 투자일임계약 체결한 경우 계약절차 등의 적정성을 확인

● 계약자 성명(법인명) : _____ 상품명 : (투자자문 / 투자일임)

● 계약일자 : _____

● 계약담당 직원 : _____

☐ 고객이 회사 담당 직원과 만났음을 확인

☐ 고객이 투자권유문서를 수령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받았음을 확인

☐ 고객이 투자원금의 손실발생 가능성 및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는가 확인

☐ 투자결정시 주요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

☐ 고객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 확인 일자 및 시간 : _____

● 확인자 : _____ (서명/인)

기타 특이 사항

[별지 제10호]

청약 철회 요청서

■ 고객 정보	
고객명 :	생년월일 :
주 소 :	
■ 청약 철회 대상	
○ (투자성 상품) 고객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하여, 아래 1) 또는 2)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 (고객과 회사간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이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객이 예탁한 금전 등을 지체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서면 등을 발송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약철회 대상 상품	☐ 투자성 상품 : ()
1) 계약서류 제공받은 날	년 월 일
2) 계약 체결일 (금소법령에 따라 계약서류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	년 월 일
■ 주의 사항	
○ 본 신청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청약 철회 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 고객은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청약 철회 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그 발송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신 청 인 : _____ (서명/인)	

위법계약 해지 요구서

■ 고객 정보	
고객명 :	생년월일 :
주 소 :	
■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	
계약해지 대상 상품명	
계약체결일	
계약해지 사유	☐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17③) ☐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18②) ☐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19①, ③) ☐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20①) ☐ 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소법 §21)
■ 계약해지 사유의 근거	
증빙자료	(예 : 별도첨부 ①, ②, ③)
참고자료	(예 : 별도첨부 ①, ②, ③)
■ 안내 사항	
○ 본 신청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고객이 회사와 체결한 위법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 스타퀘스트자산운용(주)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신 청 인 : _____ (서명/인)	

위법계약 해지 요구 관련 통지서

■ 통지 대상 고객	
고객명 :	생년월일 :
주 소 :	
■ 회사의 통지 결과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	☐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17③) ☐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18②) ☐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19①, ③) ☐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20①) ☐ 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소법 §21)
회사의 판단 결과	☐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수락 ☐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거절
(거절 시) 회사의 정당한 사유	※ 구체적으로 사유 기재
(거절 시) 정당한 사유의 객관적·합리적 근거	(예 : 별도첨부 ①, ②, ③) ※ (설명 의무 위반 시, 위반이 없다는 객관적·합리적 근거)
■ 안내 사항	
○ 스타퀘스트자산운용(주)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스타퀘스트자산운용(주) 인	